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신설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25조1)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이처럼 해당 규정은 형사처벌 조항인데,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로 수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 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 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개정안과 같 음)

1)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u>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u> 취득하여 이를 영업 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u>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u>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 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u><신 설></u>	2. 제60조의7제5항을 위반하 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 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 거나 누설한 자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음.

(전문위원 이 세 진)